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용갑・박정현

박상혁 • 염태영 • 이병진

서영교 · 황명선 · 정을호

조정식 · 김성회 · 정준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·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,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,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.

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,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 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·보조하도록 함으

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.
- ⑨ 제8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	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
의 지원) ① ~ ⑦ (생 략)	의 지원) ① ~ ⑦ (현행과 같
	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
	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
	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
	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
	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
	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⑨</u> 제8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
	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
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